
**진주중앙시장
백년브랜드 및 협동조합 육성 용역
과업지시서**

2026. 10.

(재)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

목 차

I. 과업 안내	1
----------	---

II. 과업 세부내용	4
-------------	---

III. 과업 수행지침	10
--------------	----

I

과업 안내

□ 사업목적

- 기존 ‘1884’ 브랜드를 진주중앙시장 백년시장 육성사업 전체 단위사업에 적용 가능한 통합브랜드로 고도화하고, 디자인 출원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정체성 확립 및 경쟁력 강화
- 시장 상인이 운영·사후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상인 주도형 사업추진조직(협동조합)을 설립하고,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체계 확립

□ 과업개요

- 과업명 : 진주중앙시장 백년브랜드 및 협동조합 육성 용역
-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
- 예산 : 총 180,000,000원(금일억팔천만원, VAT포함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세부사업명	사업별 예산	비고
브랜드	백년시장 통합브랜드 확립	90,000	-
협동조합	백년상무단 조성 및 운영	90,000	-

- 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 - (계약예규)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[재정경제부 예규 40호] 준용

○ 과업범위

- 시장 환경 분석 및 통합 브랜드 전략 수립
- 통합브랜드 및 응용 디자인 개발
- 지식재산권(IP) 권리화 및 사후 관리체계 구축
- 협동조합 조직 구성 및 설립
- 상인 전문역량 강화 및 도슨트 인력 양성
- 공동사업 시범운영 및 투명한 정산체계 구축

○ 공간범위

- 진주중앙시장 전역



<진주중앙시장 구역도>

○ 주요일정

주요과업	기 한	주요 내용
착수 및 준비	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	- 착수계 제출, 사업총괄책임자(PM) 및 참여인력 확정, 보안서약서 작성 - 과업수행계획서 및 세부 공정표 작성 및 승인
추진계획 수립 및 협동조합 준비	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	- 과업 추진계획 수립 - 협동조합 발기인 및 준비조직 구성
브랜드 진단 및 협동조합 설립	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	- 기존 브랜드 활용실태 전수조사 - 소비자 대상 브랜드 설문조사 - 협동조합 법정 설립절차 진행
디자인 개발 및 교육	계약체결 후 1~3개월 차	- 통합브랜드 개발 - 응용디자인 개발 - 상인 역량강화 교육 및 도슨트 양성
시범적용 및 시범운영	2026년 12월 중	- 통합브랜드 디자인 시범 적용 - 협동조합 공동사업(3건 이상) 시범운영
권리화 및 최종 정산	과업 종료 시	- 성과지표 측정 및 분석 - 최종 결과보고서, 정산보고서(증빙서류 일체 포함) 작성 및 제출

1 시장 환경 진단 및 통합 브랜드 전략 수립

□ 과업 착수 및 추진계획 수립

- 진주중앙시장 상인회, 진주시상공원활성화재단이 참여하는 착수회의 개최를 통해 추진계획 수립
- 착수 · 중간 · 최종보고 포함 총 6회 이상의 업무회의 실시

□ 기존 브랜드 및 내부환경 분석

- 기존 브랜드 활용상 전수 조사 및 문제점 분석
- 상인 · 방문객 대상 브랜드 인지도 · 충성도 조사

2 통합 브랜드 및 응용 디자인 개발

□ 통합브랜드 개발

- 세부사업별 심벌, 로고타입, 색상체계, 그래픽 모티프 등 기본체계 확립



<세부사업별 통합브랜드 예시>

□ 응용 디자인 개발 및 제작(15종 이상)

구분	세부 개발 항목
홍보류	시장지도, 포스터 등
온라인 홍보류	SNS 게시물, 카드뉴스 등
행사 적용류	축제, 유니폼 등
관광 적용류	투어지도, 도슨트 자료 등
상품 적용류	타포린백, 포장지 등

□ 디자인 시범 적용 및 현장 감리

- 참여점포 20개소 이상 및 공간에 개발 브랜드를 시범 적용
- 시범 적용 시 현장 감리 실시

3 지식재산권(IP) 권리화 및 사후 관리체계 구축

□ 상표 및 디자인 권리 확보

- 변리사 자문을 통해 상표 1안·디자인 1건 이상에 대한 국내 출원 진행하며, 등록 시까지 사후 관리 지원

□ 상인 대상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

- 진주중앙시장 상인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실시
-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배포

☐ 운영관리 매뉴얼 구축 및 인계

- 브랜드 관리·승인을 규정한 운영 지침을 마련
- 진주중앙시장 상인회 및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디지털 원본 파일(AI, PDF 등)과 사용 매뉴얼 일체를 인계

4 협동조합 조직 구성 및 설립

☐ 준비조직 구성

- 초기 운영을 주도할 발기인 5명 이상과 예비조합원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조합원 확보

☐ 협동조합 설립 절차 완수

-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정관 작성, 창립총회, 사업자등록, 별도계좌 개설 등 법정 설립 절차 진행

5 상인 전문역량 강화 및 도슨트 인력 양성

☐ 실무중심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

- 협동조합이 실제 담당할 공동사업과 연계하여 총 8회(28시간)의 교육 운영

☐ 시장 가이드 도슨트 선발 및 배치

- 진주중앙시장의 역사, 경제유산 등 특화 해설 시나리오 개발
- 교육 수료 및 현장 시연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5명 이상의 도슨트 선발 및 배치

6 공동사업 시범운영 및 투명한 정산체계 구축

☐ 공동사업 시범운영

- 교육에 그치지 않고, 최소 3개 공동사업을 시범운영하여 수익성과 운영 가능성 검증

☐ 컨소시엄 구성

- 사회적연대 경제조직 또는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

☐ 투명한 수익금 관리 및 정산

-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수익금은 협동조합 명의의 별도 계좌로 관리
- 수익금 관리대장 작성, 지출 증빙 보관, 월 1회 점검 및 종료 시 정산보고서 제출

7 보고 및 성과품 제출 요령

□ 정기 및 수시 보고 체계

- 착수보고 :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(총괄 PM, 인력 투입 계획, 세부 일정표 제출)
- 주간/월간 보고 : 주간 단위 과업 진행률 공유 및 월간 단위 보고
- 최종보고 : 과업 종료 10일 전 최종 결과보고서 초안 제출 및 종합 성과 보고회 개최

□ 제출 성과품 규격 및 수량

성과품명	제 출 시 기	수 량	형태 및 비고
착수보고서 및 수행계획서	계약 후 7일 이내	1부	서면 책자 및 PDF 파일
브랜드 진단 및 조사 결과보고서	과업 착수 후 30일 이내	1부	전자문서(PDF)
브랜드 가이드 및 협동조합 운영 매뉴얼	과업 종료 10일 전	각 1부	칼라 제본 책자 및 PDF
최종 결과보고서	과업 종료 시	2부	칼라 제본 책자 및 PDF
정산보고서 및 증빙대장	과업 종료 시	1부	원본 영수증, 수령증, 회계 증빙 일체
통합 원본 데이터 USB	과업 종료 시	2식	AI · SVG · PDF 등 디자인 원본, 교육 · 도슨트 교재, 회의록, 운영대장 일체

III

과업 수행지침

1 일반 준수사항

-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, 주요 사항(추진 방향, 일정 변경 등) 발생 시 사전에 발주기관(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)과 협의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중 세부내용이나 일정이 사업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과업 범위 내 경미한 추가 보완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
-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

2 조직 구성 및 보고 체계

- 본 과업은 디자인, 브랜딩, 마케팅(상인조직화)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, 사업수행 총괄 책임자 (PM)를 반드시 지정해야 함
-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(또는 지정일)에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, 중간보고, 최종보고(과업종료 10일 전) 및 주요 결정사항 발생 시 수시보고를 수행해야 함

3 지식재산권 및 사후관리

-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, 저작권, 지적재산권(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)은 발주기관이 소유함
- 과업 완료 후라도 하자나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 과업수행자는 별도 용역비 청구 없이 이를 재검토 및 보완해야 하며, 용역 완료 후 1년간 사업수혜자(상인 및 조합) 대상 온·오프라인 문의 응대 등 사후관리를 지원해야 함

4 위반행위 조치 및 분쟁 해결

- 계약상대자가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, 사전협의 없이 무단으로 과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, 고의로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부당한 하도급을 준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과업지시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최종 결정권을 우선시함

5 안전 관련 유의사항

- 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, 본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 민·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
- 과업에 필요한 작업,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
-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함